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54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엄삿별,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다.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보급 및 이용촉진(안 제8조)
- 마. 단체의 육성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

2) 「문화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1. 16. ~ 2023.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戲)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금천구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사업

5.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구청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기본법」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